

## 음악치료 국가자격증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 조사\*

박하현\*\*, 박혜영\*\*\*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 국가자격증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 참여에 동의한 전국의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한 후, 143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음악치료사의 배경정보 10문항,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 인식 11문항, 기대효과 8문항, 자격관리 7문항, 기타 의견 서술 1문항, 전체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음악치료사들은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에 대해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채용기관 관계자들의 음악치료 인식도가 낮다고 느낄 때 국가자격증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민간자격증의 남발이 음악치료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직업 환경이나 처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자격증을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본 연구의 참여자가 국가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단일화된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제한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신중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음악치료사, 음악치료, 국가자격증, 인식도, 설문조사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주저자: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음악치료사, 음악심리재활사 1급(MTPR)

\*\*\*교신저자: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조교수, 음악중재전문가(KCMT) (legendphy@kosin.ac.kr)

## I. 서 론

우리나라 보건·복지분야의 2020년 재정규모는 180.5조원 수준으로 총 지출인 512.3조원 대비 비중이 35.2%이다(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0). 이는 현대사회가 개인의 삶의 질 제고에 관심이 높으며, 물리적인 질병의 치료를 넘어선 웰빙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이 창출되고 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외국과의 직업 비교·분석을 통한 신(新)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 도입과 활성화가 가능한 직업 100여개 중 의료분야에 ‘음악치료사’가 채택되었다.

음악치료는 예술의 한 분야인 음악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심리, 생리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 환경 내 변화를 유도하는 원리 및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전문음악치료사의 진단, 적용 및 평가의 체계적 과정을 통해 치료목적을 성취하는 임상근거기반 영역이다(Kim, 2015). 음악치료사는 건강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다룰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특별히 훈련된 사람(specially trained personnel)’으로서, 전문성은 치료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Bruscia, 2003). 클라이언트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해 음악치료 목적과 목표를 확립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음악치료 활동을 구성하고 적용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6).

국내 음악치료는 1997년 첫 석사학위과정 개설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3개 대학의 학사과정을 통해 전공수업이 진행되고 있다(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2020). 음악치료가 국내에 도입된 후,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악치료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음악치료 관련 학과 및 전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음악치료사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내담자들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지식 및 임상적 기술을 겸비하고, 전문화된 음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Choi, 2016). 이처럼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대학교육이라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정이 시행되었으나, 이를 통해 배출된 훈련된 치료사들의 자격 검정이 국가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사설기관 및 단체들이 비전공자 및 관련분야의 유사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사 양성교육이 만연한 실정이다(Kim, 2015).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No. 11722). 이와 같은 자격은 직무능력에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격 주체와는 관련성이 없으나, 그동안 자격관리 운영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국가자격, 민간인 경우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왔다(Back, 2019). 법령상 구체적으로 구분되는 자격의 종류는 관리

·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자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민간자격이라고 정의한다(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No. 11722). 민간자격제도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대한 부응과 자격제도의 관리주체의 개발화와 다원화, 운영의 체계화와 효율화, 직업 능력개발 촉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이 도입 배경이며,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 사업 내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등록민간자격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No. 11722)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신설할 수 있다(Seo et al., 2000).

실제 2020년 등록민간자격의 운영기관현황은 법인 3,931곳, 개인 및 기타단체 5,538곳에서 관리·운영되고 있고, 등록된 자격은 38,10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Seo, Kim, Kim, & Kim, 2000). 2020년 4월 기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음악심리’, ‘음악중재’, ‘음악임상’, ‘음악재활’의 명칭을 사용한 자격은 188개이며, 이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No. 11722)에 따라 등록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된다. 188개 중 35개 자격만 취득현황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된 기관을 제외한 누적 취득자수가 500명 이상이다. 또한, 검정요건, 교육이수시간, 실습시간은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없이 수많은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관리·운영기관도 각종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 등 일관된 기준이 없는 등록자격이 난무하다. 「의료법」 제27조 제2항(Medical service Act, No. 8852)에 따라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음악치료사는 공식적으로 ‘치료사’라는 명칭을 자격증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중재전문가, 음악임상가, 음악심리상담사 등의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자격취득 요건 또한 상이하다. 이러한 국내 음악치료 관련 자격현황과 달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5개국의 음악치료사 자격은 음악치료사(Music Therapist) 명칭을 사용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이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의 실정과 매우 상이하였다. 또한, 국내 유관 자격인 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 15904)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되며,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No. 14219)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따르면, 음악치료사는 ‘음악 및 미술치료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음악이나 미술 활동을 통해 증상을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 예시는 ‘음악치료사’와 ‘미술치료사’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직업분류에서는 음

악치료를 치료영역의 직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치료사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는 현행법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국내에는 현재 다양한 자격수준을 가진 치료사들이 뚜렷한 경계 없이 치료수요가 있는 곳에 전문성보다는 서비스 제공유무에 대한 기준으로 활동하고 있다(Kim, 2015). 현재 남발되고 있는 등록민간자격증으로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검증되지 않은 음악치료사가 배출되어 음악치료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음악치료의 이론, 연구, 임상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의 전문성을 입증하여 학문적 당위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악치료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음악치료사의 직업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인식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국가전문자격은 특정한 법률, 예컨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정부의 부·처·청·위원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자격으로서 민간자격에 비하여 자격의 활용률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Kim, 2016). 음악치료사 또한 사회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공신력 있는 자격도입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자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도 있고, 자격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동기를 주는 효과나 권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eo, 2012). 이에 반해 국가자격증이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강화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한 해결책 전부는 아닐 것이다. 국가가 간섭을 함으로써 오히려 행정적이고 융통성이 없어 경직된 사무행정으로 굳어질 수도 있다(Seo, 2012). 또한, ‘음악치료’ 학문의 특성상 심리, 재활, 교육, 발달 영역 등에서 임상대상군의 필요에 따라 이론, 연구, 임상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이므로, 단일화된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이 오히려 학문의 다양성과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에 공식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직무를 사전에 명확하게 분석하여 그 역할과 업무범위를 타당하게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국가자격 도입 시 치료사의 지위, 급여, 관리 감독의 주체, 치료사의 활동 범위 제한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유관 자격인 언어재활사 사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자격요건과 국가시험을 통해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급 언어재활사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거나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급 언어재활사의 경우는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언어재활사 직종을 학위와 언어재활경력 두 가지의 요건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구분하고 있으나, 각 급수별로 필요한 직무

능력에 대한 분석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지 않아 급수 종류에 따른 역할 및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을 통한 1급과 2급의 급수별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워 혼란을 야기하는 실정이다(Kim & Kim, 2020).

이처럼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할 때의 예상되는 문제점 등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자격실태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자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음악치료사가 인식하는 자격증에 대한 제반적인 현상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음악치료사의 확산을 막고, 신(新)직업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강화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해 음악치료 국가자격증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음악치료사 자격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표집(sampling)은 국내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전국 13개 대학 및 대학원의 연합인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메일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협회의 메일수신동의를 한 회원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한 121명과 지역 기반 음악치료사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인 고신음악치료학회 회원들 중 자발적으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한 22명이다.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자격명은 음악중재전문가이며, 약 500시간의 이론 강의와 1040시간의 임상 실습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고신음악치료학회의 자격명은 음악심리재활사로 자격(1급)기준은 음악치료 전공 석사 졸업자(38학점 이수, 1040시간의 임상실습 수행)로 1급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기준 ‘음악심리’, ‘음악중재’, ‘임상음악’ 등의 명칭으로 총 188개의 자격이 등록되어 있어 민간 음악치료사 자격을 소지한 자들의 일원화된 협회가 부재하여 설문조사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체 중 수도권에 1곳, 지방 1곳으로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하였고, 설문을 회수한 결과 143명의 응답자가 결측값 없이 성실하게 응답하여 100% 분석하였다.

## 2. 설문지구성

본 설문지는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2008)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고안하였으며,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신설의 인식도 조사를 위한 배경정보와 ‘음악치료사 자격증 실태’,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신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의 자격요건’과 더불어 본 연구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자기보고식 설문지(self-reported questionnaire)로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5점 척도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항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표 1>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설문 구성

Category 구분	Subcategory 설문내용	Item # 문항번호	Number of items 문항 수	Cronbach's alpha
Demographics 배경정보	Gender, age, residence 성별, 연령, 거주지역	1-3	10	-
	Highest academic degree in music therapy 최종 음악치료 학위	4		
	Years of music therapy practice 음악치료경력	5		
	Work setting and employment type 근무기관유형 및 계약형태	6-7		
	Credentials/Licence held 소지 자격증 현황	8-10		
Needs for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자격증 필요성	Issues related to private licence 민간자격증 문제점	11-15	11	.742
	Satisfaction with private licence 민간자격증 만족도	16		
	Perceived needs for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자격증의 필요성	17-21		
Expectation of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자격증 기대효과	Expected effect of national certification 기대효과	22-29	8	.717

〈Table 1〉 Continued  
 〈표 1〉 계속

Category 구분	Subcategory 설문내용	Item # 문항번호	Number of items 문항 수	Cronbach's alpha
Areas of managing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자격증 자격관리의 영역	Eligibility to apply for a certification exam 응시자격	30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certification 자격관리 · 운영	31-33		
	Requirement for certification maintenance 자격 유지조건	34	7	.742
	Prerequisite for the creation of certification process 신설 선행요건	35		
	Willingness to apply for a national certification exam 응시 의사	36		
Others 기타	Other opinions 기타의견	37	1	-
Total 합계			37	.733

###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의 신설에 대한 음악치료사들의 인식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조사연구(survey research)를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설문지를 개발하고, 음악치료학 교수 1인과 음악치료학 박사 수료 이상의 전문 음악치료사 2인에게 설문지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온라인 플랫폼 네이버를 통해 배부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를 사용하였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백분율(%) 및 평균( $M$ )과 표준편차( $SD$ )를 구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는 음악치료사 143명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분포는 남자가 4.2%, 여자가 95.8%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50.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40대 22.4%, 20대 20.3%, 50대 5.6%, 60대 이상 0.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서울 30.1%, 경기 20.3%, 인천 4.9%로 수도권이 55.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부산 14.7%, 전북 9.1%, 경남 4.9%, 대구 4.2%, 대전 3.5%, 울산 2.1%, 광주 1.4%, 제주 1.4%, 세종 1.4%, 강원 0.7%, 충남 0.7%, 전남 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전체 응답자들의 음악치료 관련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최종 음악치료 학위의 분포는 석사 수료 또는 졸업이 7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석사 재학 10.5%, 박사 재학 7.0%, 박사 수료 또는 졸업 5.6%, 학사 졸업 3.5%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 경력은 1~3년 28%, 4~6년 27.9%로 경력 1~6년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 1년 미만 18.9%, 10년 이상 12.6%, 7~9년 11.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파트타임이 65.7%로 가장 높았고, 풀타임이 14%, 직접 운영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의 유형은 복지시설 45.5%, 개인센터 39.2%, 학교 27.3%, 병원 11.2%, 종교기관 1.4%, 기타 10.5%였다. 연구대상자가 소지한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면, 음악중재전문가 74.8%이 가장 높았고, 기타 국내 자격증 22.4%, 임상음악전문가 19.4%, 국외 자격증 1.4%, 기타 3.5%였다.

#### 2.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에 대한 인식도

음악치료사 현행 민간자격증에 대한 인식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현행 민간자격증 발급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은 '조금 그렇다' 41명(2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6명(25.2%), '매우 그렇다' 31명(21.7%), '조금 그렇지 않다' 21명(14.7%), '매우 그렇지 않다' 14명(9.8%)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사로 일하기 위해 음악치료사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124명(8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그렇다' 13명(9.1%),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 는 각각 3명(2.1%)으로 나타났다. 현행 음악치료사 민간자격증 발급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조금 그렇지 않다' 47명(3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37명(25.9%), '보통이다' 32명(22.4%), '조금 그렇다' 22명(15.4%), '매우 그렇다' 5명(3.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Perception on Current Status of Music Therapy Private License

〈표 2〉 음악치료사 현행 민간자격증에 대한 인식도

(N = 143)

Category 구분	n (%)					M (SD)
	5	4	3	2	1	
Appropriateness of current standards for music therapy license/certification 현행 자격증 발급기준 적절성	31 (21.7)	41 (28.7)	36 (25.2)	21 (14.7)	14 (9.8)	3.37 (1.24)
Awareness of differences between national certification and private license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 차이 인식	52 (36.4)	60 (42.0)	22 (15.4)	6 (4.2)	3 (2.1)	4.04 (.98)
Needs for obtaining certification 자격증 취득 필요성	124 (86.7)	13 (9.1)	3 (2.1)	3 (2.1)	0 (0)	4.80 (.57)
Judgment on competency of private license 민간자격증 업무능력 판단	2 (1.4)	26 (18.2)	20 (14.0)	39 (27.3)	56 (39.2)	2.15 (1.17)
Satisfaction with current licensing system 현행 자격증 발급제도 만족도	5 (3.5)	22 (15.4)	32 (22.4)	47 (32.9)	37 (25.9)	2.37 (1.13)

Note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eutral;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1명(7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금 그렇다’ 29명(20.3%), ‘보통이다’ 8명(5.6%), ‘조금 그렇지 않다’ 4명(2.8%), ‘매우 그렇지 않다’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Perceived Needs for National Certification of Music Therapists

〈표 3〉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N = 143)

Category 구분	n (%)					M (SD)
	5	4	3	2	1	
Ratings on the needs for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자격증 신설 필요성	101 (70.6)	29 (20.3)	8 (5.6)	4 (2.8)	1 (0.7)	4.57 (.78)

Note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eutral;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응답은 <Table 4>와 같다. 국가자격증 신설 필요성에 대해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인한 음악치료사의 전문성 저하’ 103명(7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요함’ 57명(39.9%), ‘음악치료사들의 사회적 인식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 31명(21.7%), ‘음악치료사들의 실질적인 능력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함’ 21명(14.7%), ‘불필요’ 4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을 느낄 때’에 대한 응답은 ‘채용기관 관계자들의 음악치료 인식도가 낮다고 느낄 때’ 89명(62.2%), ‘민간자격증 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될 때’ 72명(50.3%), ‘시간제 근무직원으로 처우 및 정보의 한계를 느낄 때’ 69명(48.3%), ‘정규직 근무형태가 적을 때’ 54명(37.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asons for Supporting the Need of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표 4>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이유

(N = 143)

Category 구분	Subcategory 항목	n	%
Perceived need for national certification 국가자격증 신설 필요성	Increased demand for music therapy services 음악치료 서비스 수요증가	57	39.9
	Deterioration in professionalism due to excessive issues of private licenses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한 전문성 저하	103	72.0
	Determining factor for competency of music therapists 음악치료사의 능력여부 파악	21	14.7
	Enhancement of public perception and self-esteem 사회적 인식 및 자긍심 제고	31	21.7
	Disagreement on the need for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4	2.8
Specific situation under which the need for national certification is recognized 국가자격증 필요성을 느낄 때	Limited opportunities for full-time employment 정규직 근무형태가 적을 때	54	37.8
	Unfair treatment for part-time workers in workplaces 시간제 근무의 처우 및 정보의 한계를 느낄 때	69	48.3
	Poor management system of private licenses 민간자격증 관리가 허술하다고 생각될 때	72	50.3
	Low awareness of music therapy from other personnel in their institutions 채용기관 관계자들이 음악치료 인식도가 낮다고 느낄 때	89	62.2

Note.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 3.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도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은 <Table 5>와 같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될 경우 채용담당자가 국가자격증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115명(80.4%)으로 가장 높았고, ‘조금 그렇다’ 21명(14.7%),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지 않다’가 각각 3명(3.5%)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사 구직활동 시, 채용담당자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의 전문성에 차이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66명(46.2%)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금 그렇다’ 50명(35%), ‘보통이다’ 10명(7%), ‘조금 그렇지 않다’ 10명(7%), ‘매우 그렇지 않다’ 7명(4.9%) 순이었다.

<Table 5> Perceptions on the Expected Effects of National Certification

<표 5>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도

(N = 143)

Category 구분	n (%)					M (SD)
	5	4	3	2	1	
Enhanced perception of music therapy professionalism by employers 채용담당자의 국가자격증 전문성에 대한 인식	66 (46.2)	50 (35.0)	10 (7.0)	10 (7.0)	7 (4.9)	3.92 (1.27)
Increased public perception 사회적 인식 향상	84 (58.7)	48 (33.6)	10 (7.0)	0 (0)	1 (0.7)	4.49 (.69)
Improved quality of education 학위과정 교육의 질 향상	71 (49.7)	52 (36.4)	14 (9.8)	4 (2.8)	2 (1.4)	4.26 (.93)
Preference of national certification by employers 채용담당자의 국가자격증 취득자 선호	115 (80.4)	21 (14.7)	5 (3.5)	2 (1.4)	0 (0)	4.74 (.58)
Increased employment rate 고용률 증가	54 (37.8)	54 (37.8)	28 (19.6)	3 (2.1)	4 (2.8)	4.02 (.98)
Improved quality of music therapy service 음악치료 서비스질 향상	76 (53.1)	49 (34.3)	10 (7.0)	7 (4.9)	1 (0.7)	4.34 (.86)
Improved treatment of music therapists 음악치료사 처우개선	65 (45.5)	62 (43.4)	14 (9.8)	1 (0.7)	1 (0.7)	4.31 (.73)
Criteria for payment of music therapists 음악치료사 임금책정	53 (37.1)	59 (41.3)	25 (17.5)	4 (2.8)	2 (1.4)	4.09 (.98)

## 4.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자격관리에 대한 인식도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자격관리에 대한 응답은 <Table 6>과 같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될 경우 응시자격은 어떻게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정규 교육기관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 119명(83.2%)가 가장 높았다. ‘정규교육기관과 비정규교육기관 졸업자는 등급별로 차별화된 자격을 부여’ 17명(11.9%), ‘비정규교육기관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와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응시자격을 부여’는 각각 3명(2.1%), ‘제한 없음’ 1명(0.7%)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자격시험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국가시험전문기관(공단)’ 86명(60.1%), ‘일원화된 음악치료협회’ 52명(36.4%), ‘특정 음악치료협회’ 3명(2.1%), ‘교수협의체’와 ‘기타’는 각각 1명(0.7%)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의 명칭은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음악치료사’ 64명(44.8%), ‘음악중재전문가’ 44명(30.8%), ‘음악재활사’ 16명(11.2%), ‘음악심리상담사’ 12명(8.4%), ‘음악임상가’ 4명(2.8%), ‘기타’ 3명(2.1%)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사국가자격증이 신설될 경우, 자격관리의 소관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보건복지부’ 125명(87.4%)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 9명(6.3%), ‘기타’ 5명(3.5%), ‘교육부’ 3명(2.1%), ‘행정안전부’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 Understanding National Certification Management

<표 6>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자격관리에 대한 인식도

(N = 143)

Category 구분	Subcategory 항목	n	%
Eligibility to apply 응시자격	Graduates of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정규교육기관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	119	83.2
	Graduates of non-regular educational institutions 비정규교육기관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	3	2.1
	Different qualification depending on institutions graduated 정규교육기관과 비정규교육기관 졸업자의 등급별 자격부여	17	11.9
	All private license holders 기존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응시자격 부여	3	2.1
	No restrictions 제한 없음	1	0.7

〈Table 6〉 Continued  
 〈표 6〉 계속

Category 구분	Subcategory 항목	n	%
Test implementation agency 자격시험주관	National testing agency 국가시험전문기관(공단)	86	60.1
	Unified music therapy association 일원화된 음악치료협회	52	36.4
	Specific music therapy association 특정 음악치료협회	3	2.1
	Council of professors 교수협의체	1	0.7
	Others 기타	1	0.7
Suggestions for name of certification 자격명칭	Music therapist 음악치료사	64	44.8
	Music rehabilitation professional 음악재활사	16	11.2
	Music psychology counselor 음악심리상담사	12	8.4
	Music intervention specialist 음악중재전문가	44	30.8
	Music clinician 음악임상가	4	2.8
	Others 기타	3	2.1
Competent ministries 자격소관부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125	87.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체육관광부	9	6.3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1	0.7
	Ministry of Education 교육부	3	2.1
	Others 기타	5	3.5
Prerequisites for establishment of certification system 국가자격증 신설 선행요건	Establishment of common curriculum across schools 학교별 공통 교과목 설정	128	89.5
	Unification of associations that issue licences 기존 자격발급 협회 일원화	0	0
	Analysis of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music therapists 음악치료사 직무분석	7	4.9
	Music therapy service demand survey 음악치료 수요조사	8	5.6
	Others 기타	0	0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되어 자격시험이 시행될 경우 응시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Table 7>과 같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104명(72.7%)가 가장 높았으며, ‘조금 그렇다’ 30명(21%), ‘보통이다’ 6명(4.2%), ‘매우 그렇지 않다’ 2명(1.4%), ‘조금 그렇지 않다’ 1명(0.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Willingness to Apply for a National Certification

<표 7> 음악치료사의 국가자격증 응시 의사

(N = 143)

Category 구분	n (%)					M (SD)
	5	4	3	2	1	
Willingness to apply for the certification	104	30	6	1	2	4.65
국가자격증 응시 의사	(72.7)	(21.0)	(4.2)	(0.7)	(1.4)	(.66)

Notes. 5: strongly agree; 4: agree; 3: neutral; 2: disagree; 1: Strongly disagree.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음악치료사 자격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국가자격증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음악치료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음악치료사의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현재 국내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 전문가 집단인 응답자의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응답자들이 채용기관 관계자들의 음악치료 인식도가 낮다고 느낄 때 국가자격증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것은 응답자들이 근무기관에서 현행 민간자격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은 음악치료사들이 공신력 있는 자격증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Baek, 2019; Kim & Kim, 2020).

둘째,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음악치료사를 채용하는 기관에서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음악치료사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한편, 국가자격증 소지자와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성에 대한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그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이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음악치료사가 채용에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국가자격증으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음악치료사와 유관 치료사인 언어치료사가 언어재활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도입한 뒤 그 방향성에 대한 선행연구(Kim & Kim, 2020)에서 이론중심이 아닌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직무에 기반한 국가시험을 제고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음악치료사의 국가자격증 신설 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시, 기존 민간자격에 대해 보건복지부 인가 단체이기만 하면 3년간 유효했다는 점과 국가자격에 미달된 자격을 철저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업적으로 남발한 자격을 떠안게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음악치료사가 국가자격 시행 시, 현재 민간자격에 대하여 정규 과정 미이수자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음악치료사의 고용률과 처우개선, 임금 등의 채용과 관련한 응답결과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보아 국가자격증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국가자격증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국가자격증이 실제 음악치료사의 채용 및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자격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응시자격에 있어 정규교육기관 졸업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82.5%)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응시 자격을 정규교육기관 졸업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선행연구(Kim, 2008)의 비율(48.4%)보다 높았다. 해당연구는 13년 전의 연구자료이며,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 초기의 연구이므로 현재까지의 민간자격제도의 변화와 민간자격증의 폭발적 증가와 관련된 결과로 사료된다. 실제 국내의 민간자격증은 2008년 501개에서 2019년 36,383개로 약 72배 증가하였으며(Seo et al., 2000),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어 음악치료 전문성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석사 수료 및 졸업자로서 현재 남발되고 있는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전문성이 저하됨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시사한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자격명칭은 ‘음악치료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격관리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가 매우 높았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만 ‘치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의 입법적 상황과 달리, 응답한 음악치료사들은 음악치료의 치료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과 관련하여 서술한 의견 중에서도 응답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기존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음악치료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진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공신력을 가진 자격증은 사회의 필수인력으로 인정받고 고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치료 국가자격증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도에 대한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응답자의 다수가 석사학위 이상의 음악치료사 전문가 집단이며, 음악치료의 공급자 입장의 의견만 조사되었으며, 143명의 의견으로 일반화하기

는 어렵다는 점에 한계를 가진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음악치료의 수요자 및 기관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 음악치료 수요자들의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공급자인 음악치료사의 인식도와 비교연구를 통해 음악치료 자격 및 서비스의 방향을 더욱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국내 실정에 맞는 음악치료사 자격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유관 치료사 자격의 국가자격증 신설의 배경을 살펴본 결과, 국가자격증이 도입된 언어재활사의 경우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며, 작업치료사의 경우 동일한 국가전문자격증이나 ‘면허증’으로 발급된다. 음악치료 내부에서부터 ‘자격증(certification)과 면허증(license)’ 및 ‘학위제와 비학위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학문과 법이 교섭되는 가장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자격증 입법 시 자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언어재활사 자격의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이며(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 15904), 작업치료사 자격의 법적근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이다(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No. 14219). 음악치료사의 자격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체성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자격발급 협회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셋째, 국가자격은 해당 분야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음악치료사 자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해당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국가자격증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민간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이 있다. 이러한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은 검정기준이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요한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직무표준을 기반으로 음악치료사의 직무를 표준화하고 통일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신설을 위해 음악치료전공을 개설한 학교에서의 자격증 발급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증 신설 이전에 음악치료 내부에서 음악치료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치료사 국가자격증 신설은 국내의 민간자격증의 남발로 인해 학위제도권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 음악치료사들의 입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ek, O. S.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Journal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8(1), 205-226.  
[백옥선 (2019).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자격기본법」 개선 방안. *직업과 자격 연구*, 8(1), 205-226.]
- Brusica, K. E. (2003). *Music therapy* (B. C. Choi,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9).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89 출판).]
- Choi, J. A. (2016). Music therapists' perceptions on professionalism.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3(2), 31-48.  
[최주애 (2016). 직업전문성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3(2), 31-48.]
- Kim, N. Y. (2016).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art therapy -Approval of visual art therapy as a complementary and substitutional medical therap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김나연 (2016). *미술치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의 보완대체의료 자격인정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S. H. (2008). A questionnaire-based survey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introducing music therapist qualifying exa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김선호 (2008). *음악치료사 자격시험 도입에 관한 인식도 조사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S. J. (2015). The current status of music therapy certification system and professionalism: Settlement of rehabilitation therapy system in the developed countries. Panel discussion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Rehabilitation Therapist Association, Retrieved from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0734>  
[김수지 (2015). 음악치료사 자격제도의 국내·외 현황과 전문성: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https://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00734>에서 인출.]
- Kim, W. S., & Kim, S. H. (2020). A study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speech-language therapist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29(1), 85-91.  
[김화수, 김시현 (2020).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의 방향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29(1), 85-91.]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6). *Job Analysis of Music Therapists* (Report No. 2006-11). Retrieved from <https://www.krivet.re.kr/ku/da/kuBBAVw.jsp?gn=E1-E1201409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음악치료사 직무분석* (보고서 번호 2006-11). <https://www.krivet.re.kr/ku/da/kuBBAVw.jsp?gn=E1-E120140903>에서 인출.]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20). *Summary of Budget for FY2020* (Report No. 11-1051000-000020-10).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4052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4052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

[기획재정부 (2020). *나라살림 예산개요* (보고서 번호 11-1051000-000020-10). [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4052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https://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menuNo=502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4052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에서 인출.]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Music Therapists (2020). *To be an expert in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 Retrieved from <http://nakmt.or.kr/page/s0202.php>

[전국음악치료사협회 (2020). *음악중재전문가가 되려면*. <http://nakmt.or.kr/page/s0202.php>에서 인출.]

Seo, I. H. (2012). *Issues following promotion to national qualification for language rehabilitation*. Retrieved from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20611024654851250#z>

[서인환 (2012).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승격 이후의 문제*.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20611024654851250#z>에서 인출.]

Seo, J. H., Kim, H. S., Kim, D. K. & Kim, S. J. (2000). *Private Qualification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s://www.krivet.re.kr:8443/repository/handle/201303/959>

[서준호, 김현수, 김덕기, 김상진 (2000). *민간자격정보*. <https://www.krivet.re.kr:8443/repository/handle/201303/959>에서 인출.]

### Legislatio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ended by Act No. 15904, Dec. 11, 2018) article 72-2.  
[장애인복지법 (개정 2018. 12. 11.) 제72조의2.]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etc. Act (Newly Inserted by Act No. 14219, May 29, 2016) article 2-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신설 2016. 5. 29.) 제2조 제2항 제4호.]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mended by Act No. 11722, Apr. 5, 2013) article 2-1, 2-5.

[자격기본법 (개정 2013. 4. 5.) 제2조 제1호, 제2조 제5호.]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mended by Act No. 11722, Apr. 5, 2013) article 17-1.

[자격기본법 (개정 2013. 4. 5.) 제17조 제1항.]

Medical service ACT (Amended by Act No. 8852, Feb. 29, 2008) article 27-2.

[의료법 (개정 2008. 2. 29.) 제27조 제2항.]

- 게재신청일: 2021. 03. 18.
- 수정투고일: 2021. 05. 17.
- 게재확정일: 2021. 05. 26.

## A Survey of Music Therapists' Understanding of Music Therapy National Certification\*

Park, Ha Hyun\*\*, Park, Hye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music therapists' awareness of the music therapy national certification (MTNC). Onlin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usic therapists who voluntarily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research and 143 completed surveys were collecte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7 questions (background information, awareness of the necessity for MTNC, expected effects of national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ollected data, music therapists reported that they were highly aware of the necessity for MTNC.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excessive issuing of private licenses might deteriorate the quality of music therapy services and job opportunities. As alternatives to address private license-related issues, participants agre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Given that participants did not have enough knowledge of MTNC and the MTNC may have both pros and cons, the results should be generalized with caution. Still, this study could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further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MTNC.

*Keywords: music therapist, music therapy, national certification, understanding, survey*

---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2020).

\*\*First author: Music Therapist, Banyeo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 Music Therapist in Psychology and Rehabilitation(MTPR)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Kosin University.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legendphy@kosin.ac.kr)